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6년	5월	17일	조례	제 882호
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61호
개정	2009년	1월	2일	조례	제1008호
일부개정	2014년	12월	31일	조례	제1386호
일부개정	2017년	4월	18일	조례	제1579호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1호
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년	12월	28일	조례	제20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5, 2014. 12. 31, 2022. 1. 13>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 15, 2009. 1. 2, 2014. 12. 31>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0,000원으로 한다.
2. 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 오산시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최초 임기 개시 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를 제외한다)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구분한다.

③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구분한다.

제4조(여비 지급 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 13>

[전문개정 2018. 12. 26]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 <2008. 1. 15 조례 제9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부칙 <2009. 1. 2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 13 조례 제1982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8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2022. 12. 28>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23년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656,070원으로 한다.
2024년	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5년	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2026년	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적용하여 합산한다.

[별표 2] 삭제 <2014. 12. 31>